건설안전 실무만화

재해예방기술지도













건설안전 실무만화

재해예방기술지도 · 핵심 확인사항

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대상 공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법정 제외 요건을 함께 대조합니다.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의무자는 해당 발주자 또는 법정 건설공사도급인입니다.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계약 의무자에서 제외합니다. 착공일의 전날까지 지정 지도기관과 계약합니다.

그림은 이해를 돕는 설명 예시입니다. 전체 대상·예외·절차·근거는 연결된 본문과 공식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안전한플랜 · 만화 수정 2026-11-04 · 근거 확인일은 본문 표시

건설안전 실무만화

재해예방기술지도













건설안전 실무만화

재해예방기술지도 · 핵심 확인사항

공사기간 1개월 미만,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의 전담 선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등 제외 요건을 구분합니다.

안전관리자 공동 선임은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 구역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 공사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합니다. 기술지도 제외가 현장의 다른 안전관리 의무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림은 이해를 돕는 설명 예시입니다. 전체 대상·예외·절차·근거는 연결된 본문과 공식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안전한플랜 · 만화 수정 2026-11-04 · 근거 확인일은 본문 표시

건설안전 실무만화

재해예방기술지도













건설안전 실무만화

재해예방기술지도 · 핵심 확인사항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술지도 횟수는 공사기간(일)을 15일로 나누고 소수점을 버려 계산하며,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는 기준을 함께 적용합니다.

40억원 이상 공사는 해당 지도 분야의 법정 자격 인력이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해야 하는 기준도 확인합니다. 공사기간 변동으로 횟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8의 사유와 절차를 대조합니다.

그림은 이해를 돕는 설명 예시입니다. 전체 대상·예외·절차·근거는 연결된 본문과 공식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안전한플랜 · 만화 수정 2026-11-04 · 근거 확인일은 본문 표시

건설안전 실무만화

재해예방기술지도













건설안전 실무만화

재해예방기술지도 · 핵심 확인사항

방문 전 계약·공사금액·공정표·도면과 예정된 위험 작업·장비 계획을 공유합니다. 현장 방문 때 확인한 위험요인에 맞춰 실제 안전조치를 이행합니다.

지도결과서는 담당자·개선기한·조치 결과와 연결해 관리합니다. 공정·기간 변경과 미완료 사항을 지도기관에 공유하고 다음 방문의 후속 확인에 반영합니다.

그림은 이해를 돕는 설명 예시입니다. 전체 대상·예외·절차·근거는 연결된 본문과 공식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안전한플랜 · 만화 수정 2026-11-04 · 근거 확인일은 본문 표시

건설안전 실무만화

재해예방기술지도

공식 근거 원문 · 발췌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전체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1-04 · 해설과 구분하여 수록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①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2. 8. 16.>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법 제73조제1항의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이하 “기술지도계약”이라 한다)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해야 한다. <신설 2022. 8. 16.>

공식 원문 열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전체

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chrClsCd=010202&lsptttninfSeq=154219

표시한 조문·항의 문구를 수록했습니다. 관련 법령 전체와 최신 변경사항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